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34
----------	-------

발의연월일 : 2022. 3. 31.

발 의 자 : 이달곤 · 이 용 · 홍문표
김학용 · 강민국 · 김태호
박완수 · 박대수 · 구자근
권명호 · 박대출 · 김영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가 충분하지 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규정이 모호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함(안 제22조 제6항제1호의2 및 제47조제1항 각 호 · 제2항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
제4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① ~ ⑤ (생략)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u>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u> 2. ~ 7. (생략) ⑦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 업무지원</u> 2.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 ----- ----- -----. <u>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u> <u>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u> <u>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u>

<u><신 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생 략)</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